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7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7일

3. 제안이유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조정 배치 하고,

○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소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65명 ⇒ 2,484명 (증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6명 ⇒ 1,383명 (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8명 ⇒ 60명 (증 2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 9. 11 조례 제2408호로 전문개정 운용 중에 있으며,

-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과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장을 위해 승인 받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19명으로 의회 2명과 집행부 17명이며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금번 증원으로 총 정원은 2,465명에서 2,484명임.

※ 의회사무처 정원 : 58명 → 60명 (증 2명)
집행기관 정원 : 1,366명 → 1,388명 (증 17명)

-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9명, 6급이하 9명이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부서별 정원조정계획』 과 같이 배치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현재 우리도 표준정원 운영 실태와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 11명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조
 -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 임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서별 정원 조정계획

부서별	정원 조정	직렬·직급	조정내역	비고
계	19명			
감사관실	3	행정5급 1 행정7급 1	공직윤리담당 신설	정원승인
기획관실	2	행정5급 1 행정6급 1	교육지원담당 신설	자체조정
예산담당관	2	행정5급 1 행정7급 1	투자심사담당 신설	자체조정
혁신분권담당관	11	행정4급 1 행정5급 2 6급 3 7급이하 4	혁신분권담당관 신설 - 혁신기획팀 - 분권이양팀 - 균형발전팀	정원승인
도정혁신기획단	△11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변경	
세무회계과	1	행정·세무7급 1	채납징수 전담인력 보강	자체조정
사회복지과	1	행정7급 1	'05전국장애인체전 준비인력 보강	〃
농정과	2	행정5급 1 행정·농업7급 1	농업협상대책팀 (IF팀)	〃
농산지원과	1	농업5급 1	바이오농업담당 신설	정원승인
문화예술과	2	행정5급 1 행정6급 1	문화산업담당 신설	정원승인 자체조정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2	행정·토목· 건축·환경 5급 1 행정6급 1	입법지원담당 신설 특위지원담당 신설	정원승인 자체조정
바이오산업추진단	1	행정·시설4급 1	사업지원과 보강	자체조정
산림환경연구소	1	임업5급 1	산림환경과 신설	정원승인
축산위생연구소	1	축산연구관 1	유전공학팀 신설	〃